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87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9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 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예견됨에 따라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원격 출석 및 발언 규정을 신설함(안 제32조제3항 신설).
- 비대면 표결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41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원격 출석 및 표결)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발언의 장소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32조(발언의 장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41조의2(원격 출석 및 표결)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</p>